

##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처리지침

제정 2009. 4. 27.  
개정 2010. 8. 27.  
개정 2011. 1. 17.  
개정 2011. 8. 30.  
개정 2014. 2. 26.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(이하 “법학전문대학원”) 학생의 성적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성적평가방법 등의 사전공개) ① 담당교수는 매학기 전에 제출하는 수업계획서에 구체적인 성적평가방법과 평가대상항목을 명시하여야 한다.

② 법학전문대학원의 일반적인 성적평가기준과 전항의 수업계획서에 개별적으로 명시된 교과목별 성적평가방법은 학생들에게 매학기 전에 공개되어야 한다.

제3조(성적등급) ① 교과목 성적의 등급은 A, B, C, D, F로 하고, 각 등급을 +(상), 0(중), -(하)로 세분한다.

② 각 성적등급의 평점은 다음과 같다.

등급	A <sup>+</sup>	A <sup>0</sup>	A <sup>-</sup>	B <sup>+</sup>	B <sup>0</sup>	B <sup>-</sup>	C <sup>+</sup>	C <sup>0</sup>	C <sup>-</sup>	D <sup>+</sup>	D <sup>0</sup>	D <sup>-</sup>	F
평점	4.3	4.0	3.7	3.3	3.0	2.7	2.3	2.0	1.7	1.3	1.0	0.7	0

③ 수강신청 변경기간 후 취소된 교과목은 “W”로 표기한다.

④ 학기 중 휴학한 자의 교과목은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.

⑤ 법학전문대학원 학칙 제16조 제1항,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세칙 제14조에 따라 학점을 인정할 경우 그 학점은 “S”로 표기하고, 위 학칙 제16조 제2항, 위 세칙 제15조에 따라 학점을 인정할 경우 외국 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에 상응하는 학점을 그대로 인정한다.

제4조(성적부여방법) ① 필수과목의 성적등급 부여는 [표1]의 비율에 따라, 선택과목은 [표2]의 비율에 따라 상대평가를 행한다.<개정 2010.8.27>, <개정 2011.1.17.>, <개정 2014.2.26>

[표1]

구 분	4.3 만점
A : 25%	A <sup>+</sup> : 7%, A <sup>0</sup> : 8%, A <sup>-</sup> : 10%
B : 50%	B <sup>+</sup> : 15%, B <sup>0</sup> : 20%, B <sup>-</sup> : 15%
C : 21~25%	C <sup>+</sup> : 9%, C <sup>0</sup> : 7%, C <sup>-</sup> : 5~9%
D : 0~4%	D : 0~4%

[표2]

구 분	4.3 만점
A : 25~35%	※동일 성적등급 내의 +(상), 0(중), -(하)의 비율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정할 수 있다.
B : 35~50%	
C : 15~40%	
D : 0~4%	

② 외국어 교과목과 수강생의 수가 10명 이하인 과목에 대해서는 제1항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수강생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A등급이 40%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. <신설 2011.1.17.>, <개정 2014.2.26>

③ 법조윤리, 법률정보의 조사, 법문서의 작성, 법무실습, 모의재판, 임상법학은 서울대학교 학

칙 제76조 제2항에 따라 급락(S/U)만 구분하며 평점은 부여하지 아니한다.<신설 2011.1.17.>

④ (삭제) <신설 2011.1.17.>, <개정 2014.2.26>

⑤ 제1항의 표의 비율은 최대비율이며 반올림으로 계산한다. 상위등급에서부터 부여하여 최대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하위등급에서 사용할 수 있다.<신설 2011.1.17>

⑥ 담당교수는 한 학기동안 당해 교과목의 결석일수가 전체 수업일수의 25%를 초과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F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2.26>

제5조 (성적의 제출 및 처리) ① 교과목을 담당한 교수는 학기 종강일 후 1주 이내에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출된 성적표의 성적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그 성적을 “F”로 처리한다.

③ 제출된 성적표에 기초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은 열람용 성적표를 작성하여 학생이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6조 (성적의 열람 및 이의기회 보장) ① 학생은 성적을 열람한 후 당해 학기 종강일 후 3주 이내에 서면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 이의할 수 있다.

② 전항의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교수는 성실하게 그 이의 내용을 검토하고,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성적을 변경하여야 한다.

③ 담당교수는 제1항의 이의제기 기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1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절한 방법으로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.

제7조 (성적정정) ① 제6조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. 다만, 담당교수의 착오 또는 성적기재 누락이 있을 때, 원장은 당해학기 종강일 후 4주 이내에 담당교수의 정정사유서 및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성적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 총장은 전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정정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성적의 정정을 허가한다.

제8조 (성적산출자료의 보관의무) 담당교수는 각 교과목의 출석부, 시험지, 채점표 등 성적산출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종강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.

제9조 (휴학자의 성적처리) 학기 중 휴학한 자의 교과목은 그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종강일 이후 학칙에서 정하는 군복무 또는 군대체복무를 위해 휴학하는 학생의 수강신청 교과목은 인정하고 그 성적을 부여한다.

제10조 (징계받은 자의 성적처리) 징계를 받은 자의 성적처리에 관한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회의에서 정한다. 다만, 학기말 시험 이전에 수업주수 4분의 1 이상의 기간에 해당하는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전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.

제11조 (평점의 계산) ① 성적 평점평균 산출은 교과목의 학점수와 평점을 곱한 평점합계를 신청학점 합계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를 절사한다.

② 성적 평점평균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성적 순위를 정한다.

1. 평점합계
2. 학점합계

### 3. 성적취득 과목수

제12조 (성적등급의 환산) 성적등급이나 평점평균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1의 성적평점환산기준표를 적용한다.

제13조 (성적미달자에 대한 지도) ① 지도교수는 당해 학기의 성적평점이 2.3 미만인 학생에 대하여 상담 및 조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 지도교수는 필요한 경우 학생지원센터의 학생상담실에 당해 학생에 대한 상담을 의뢰할 수 있다.

제14조 (서울대학교 관련 규정의 적용)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대학교 학업성적처리규정에 의한다.

부 칙(2009.4.27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0.8.27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1.1.17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1.8.30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4.2.26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성적평점환산기준표

성 적	평 점	환산점수	성 적	평 점	환산점수
A <sup>+</sup>	4.3	100	C <sup>+</sup>	2.3	79
	4.25	99		2.2	78
	4.2	98		2.1	77
	4.1	97			
A <sup>0</sup>	4.0	96	C <sup>0</sup>	2.0	76
	3.9	95		1.9	75
	3.8	94		1.8	74
A <sup>-</sup>	3.7	93	C <sup>-</sup>	1.7	73
	3.6	92		1.6	72
	3.5	91		1.5	71
	3.4	90		1.4	70
B <sup>+</sup>	3.3	89	D <sup>+</sup>	1.3	69
	3.2	88		1.2	68
	3.1	87		1.1	67
B <sup>0</sup>	3.0	86	D <sup>0</sup>	1.0	66
	2.9	85		0.9	65
	2.8	84		0.8	64
B <sup>-</sup>	2.7	83	D <sup>-</sup>	0.7	63
	2.6	82		0.6	62
	2.5	81		0.5	61
	2.4	80		0.4	60
				0.3	59
				0.2	58
				0.1	57
			F	0	0